

이익을 유보하지 않고 공탁된 재결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

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재결보상금을 아무런 이익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토지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한 이익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결에 승복하고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.<BR>(대법원 1985.12.24. 선고 85누595 판결)<BR>